서울지방병무청

수신자 서울대학교총장(학생지원과)
(경유)
제목 전문연구요원 장학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

1. 관련근거

가. 병역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

나.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(병무청 훈령 제1306호)

다. 서울대학교 학생지원과-1716(2016.03.22) “전문연구요원 장학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”

2. 전문연구요원 장학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
가. 질의내용

전문연구요원에게 강의·연구지원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?

나. 회시

장학금의 지급은 귀 교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우리청의 판단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단, 귀교 <강의·연구지원장학금 관리 지침> 제5항(임무)의 제나호 ~ 마호에 명시된 임무는 전문연구요원 해당분야가 아님에 따라 강의/연구지원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임무부과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.

다. 이유

전문연구요원은 병역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편입당시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 종사하여야 함. 단, 대학 연구기관 종사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(연구)조교에 한해 겸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연구분야 외의 임무는 부여하지 말아야 할 것 임. 끝.

서 울 지 방 병 무 청 장

주무관	계장	과장	전결 04/12
임정은	박은주		박호빈

협조자

시행 산업지원과-2602 (2016.04.12.) 접수 학생지원과-2130 ((2016.04.12))

우 073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,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(신길동) / caupsyche03@korea.kr

전화 02-820-4496 전송 02-820-4307 / caupsyche03@korea.kr / 공개

세대가 공감하고, 청춘과 함께하는 新병역문화